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식품원료 사용기준(제한 등) 위반 품목제조보고 수리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군

내 용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제품의 생산 시작 전 또는 생산 이후 7일 이내에 관할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를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식품원료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연도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품목제조 보고를 받은 해당 관청은 보고 받은 사항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¹⁾인 ‘오리나무(수피, 잎)’, ‘도꼬마리(열매)’, ‘느릅나무(껍질)’를 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공전)」 제2. 1. 2) 식품원료 판단기준 (7), ①, ㉔에 따라 가공 전

1) 식품공전 별표 2. 식물성 147종, 동물성 8종, 미생물 30종, 기타 12종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배합 시 50% 미만(배합수는 제외)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군(○○○○과)은 ‘오리나무’ 등이 사용된 식품의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경우 식품공전에서 정한 제한적 식품원료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군(○○○○과)은 아래 [표]와 같이 울산광역시 ○○군 ○○면 소재 ○○○○(주)(대표 ○○○)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원료’인 ‘오리나무’, ‘도꼬마리’, ‘느릅나무’를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제조하여 품목제조 보고한 ‘○○○○’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그대로 수리하였다.

[표] 식품원료 사용제한 미준수 품목 내역

관할기관	업체명 (대표자)	보고일자	품목유형	품목명	원재료명	감사사항
○○군	○○○○(주) (○○○)	2017.02.15	액상차	○○○ ○	오리나무 50%, 도꼬마리10%, 느릅나무10% ~ ~ ~ ~ ~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사용기준 위반

※ 정부합동 감사기간 중 ‘18. 3. 5. 품목제조보고의 원재료 함량을 변경하여 보고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군수는

[주의] 식품 품목제조보고 수리 시 식품원료 사용기준(제한)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